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」 전부개정 등 행정규칙 개정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」 및 「학생인건비 계상기준」(과기정통부 고시) 등 행정규칙이 2019.8.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학생인건비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특히 각 부처, 전문기관 및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에서는 학생인건비 풀링제도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대상기관 : 각 부처, 전문기관 및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

나. 대상과제 :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정부R&D 과제 등

다. 주요내용

- 1) 학생인건비 비목으로 계상 및 집행 되는 모든 인건비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적용
- 2) 과제 협약시 학생인건비는 총액만 기재(학위과정별 월급여, 월작업량 등 미작성)
- 3) 각 부처 및 전문기관에서는 연구과제 단위로 학생연구원 개인별 참여율 등록·관리 금지
- 4) 통합관리 지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학생인건비 풀링계정으로 이체한 경우,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비의 사용 실적 보고시 집행이 완료된 연구비로 처리하고 각 부처 및 전문기관 정산에서 면제, 학생인건비 풀링계정의 집행잔액은 이월사용
- 5) 각 부처 및 전문기관에서 연구책임자 소속의 변경 또는 연구과제의 중단·해약 등으로 학생인건비를 회수해야 하는 경우, 해당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 만큼의 학생인건비를 회수
- 6) 통합관리 지정기관은 '(가칭)학생연구원 운영규정'을 2020.2.29일까지 마련하고,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방식인 기관(학과 등) 단위 통합관리 전환을 적극 검토
- 7)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는 학생인건비 계상 및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, 시행시점을 유예하여 2020.12.31일까지 학생인건비로 계상 및 지급 가능

※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

붙임 1.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개선 방안 1부

2.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전부개정고시 1부

3.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일부개정고시 1부. 끝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수신자 대학, 출연연, R&D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 등



주무관 김현우 연구제도혁신과장 전결 2019. 8. 5.

협조자

시행 연구제도혁신과-1363 (2019. 8. 5.) 접수

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, (어진동) / <http://www.msit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6955 팩스번호 044-202-6048 / kimhw28@korea.kr / 대국민 공개